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주도사업 시행
-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위드 코로나 준비와 현황
- (미국) 챗봇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미국 윌리엄스버그 시와 피닉스 시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주도사업 시행

주민자치회의 도입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란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설계와 도입이 시행됨(최인수·전대욱, 2020). 또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주민주권 구현’이란 목표하에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된 이래, 주민자치회 관련 입법·정책적 개선과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음(하혜영, 2020)

주민자치회의 설치기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제정) 제20조(주민자치회 설치), 제21조(주민자치회 기능)에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가지 모델(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현재 지방행정체제에서 적용이 용이한 협력형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됨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5.28. 제정)에 주민자치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됨. 이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8.3.20. 제정)으로 법제명이 개정되었으나 설치·기능에 관한 규정은 동일함. 또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함(최인수·전대욱, 2020)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사무(업무) 수행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주민자치회 기능)에 따르면, ①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크게 ①주민자치 기능, ②위탁사무 기능, ③주민밀접 협의·심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기능 배분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해 살펴보면, ①주민자치 사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사무를 말함. ②위탁사무는 민감 인력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사무임. ③협의 사무는 주민과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무를 말함

【 표 1 】 주민자치회 사무(업무) 특성 및 예시

구분	특성	예시
주민자치 사무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읍·면·동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고, 다수의 주민참여가 가능하며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무 등 •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사무 • 기존 행정체계에서 반영되기 힘든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주민자율청소 봉사단 운영, 도시미관개선 벽화사업, 벼룩시장운영, 기타 각종 지역행사 등
위탁사무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단체의 역량 활용, 공익성보다 능률성 요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 등의 관리 운영 등 •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업무 위탁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집행 업무의 위탁 <p><참고: 지자체 위탁 사무(업무) 사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 성동구 마장동 : 마을탐방 안내, 마을자율 청소, 생활안전 활동, 마을 안전지도 제작, 경로·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운영, 작은도서관 회원관리·도서구매 등 2. 경기 수원시 행궁동 : 시민자전거 대여 3. 세종 부강면 : 노인대학 운영 4. 충북 진천군 진천읍 : 「전재민촌 안심마을 희망공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 •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 등
협의사무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행정의 갈등 조정, 지역개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행정과 주민의 역할 분담이 요구되는 사무 등 • 주민의 생활편의 관련 업무협의 • 주로 문화·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주·정차구역선정 협의, 문화·복지시설 확충시 의견제시 등

자료 : 김필두(2017), 하혜영(2020), 행정안전부(2021) 재구성

주민자치회의 운영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2013.5.28. 제정)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2013년 7월 31개의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한 후, 2020년 6월 626개소, 2021년 8월 820개소의 주민자치회로 확대되어 운영됨

| 표 2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820개 읍면동, 132개 시군구, 16개 시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서울	24	171
부산	7	10
대구	5	6
인천	7	70
광주	5	32
대전	4	23
울산	3	7
세종	1	10
경기	18	177
강원	9	48
충북	3	11
충남	15	64
전북	4	5
전남	7	47
경북	2	28
경남	18	111
16	132	820

자료 : 행정안전부(2020.8),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재구성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관련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자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하혜영(2020)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 일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 364개 주민자치회의 총예산은 약 268억 원이고,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약 197억 (73.7%), 주민자치회의 자체재원이 약 70억 원(26.3%)으로 나타남. 그에 따라 주민자치회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의 한계

-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모호, 사업범위 불분명, 주민의 대표성 미흡 등이 확인됨. 그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법적근거 명확화, 주민자치회의 법인격부여 여부 결정, 유사단체와의 통합 및 업무조정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고, 보다 주민자치 사무의 개발과 수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필두·한부영. (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최인수.(20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하혜영. (2020).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최인수·전대욱. (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2021). 「2021년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 행정안전부. (2020.8).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안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전문연구원)